

1986.11.25

전화 : 735 - 3337

제	보도국장	공보국장	공보관	공보관
국	국	국	국	국

시보

차 례

- | | | |
|---|---|---|
| ◎ | 공문시행 | |
| | ○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| 3 |
| ◎ | 훈 령 | |
| | 제 642 호 :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시설및지관리규정 | 4 |
| ◎ | 고 시 | |
| | 제 832 호 :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 | 6 |
| | 제 833 호 :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 | 7 |
| | 제 83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 (기간연기) | 8 |

〈이면계속〉

[illegible]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839 호 : 보호수신규자정및해제	9
제 840 호 :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	9

㉠ 공 고

제 633 호 : 중기정비업체행정처분	10
제 634 호 : 서울특별시세입징수관공인신조및폐기	10
제 635 호 : 서울특별시세입징수관공인신조및폐기	11
제 638 호 : 서소문구역제 4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공람	12
제 639 호 : 마포로제 1 구역제 21 지구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공람	12
제 640 호 : 남대문구역제 9-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공람	13

㉡ 구 공 고

강동구제 112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	1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㉢ 사 령

공 문 시 행

뜻모아 하나로, 힘모아 새 세상

(문 인 신 략)

서 울 특 별 시

관광 33400-607

(731-6176)

1986.11.25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(3년)

제 목 : 물품관리전환 소요예산

1. 관광담당관실 소속인 종합안내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적출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니 소요부서에서는 시보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,

2.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시에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음.

가. 관리전환 대상물품 명세

물품분류번호	품 명	규 격	수량	금 액 (원)	상 태	비 고
7110-002	캐비닛	3 × 6	5	42,000	제 품	
7110-020	화일캐비닛	4 단	3	6,090	제 품	
7195-002	진열대	목재소형	6	596,640	중 고	
7110-005	철제보통의자	보통의자	29	696,020	중 고	

서 울 특 별 시 장

관광담당관 전결

수신처: 서과 1-79, 서무 1-17, 서소 1-10, 서사 1-58, 서보 1-17, 종합정보본부

훈 령

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시설 및
녹지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
한다.

1986.11.25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642 호

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시설및
녹지관리규정

제 1 조 (목적) 하천법 제 16 조 제 1
항 단서규정 및 동법 제 23 조의
규정에 의해 조성된 한강시민공원
또는 제방의 녹지와 공원관련시설,
시민편의시설 기타 이와 관련시설
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
관을 보존하고 관련시설을 건전한
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
에 한강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공
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
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관리자) ① 규정에 의한
모든 시설은 한강관리사업소장 (이
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유지관
리 한다.

제 3 조 (관리대상) 소장이 관리하여
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호에서

제기하는 바와 같다.

1. 녹지시설 : 고수부지 및 제방의
초지, 잔디 기타 녹지보호시설
2. 조경시설 : 화단, 분수, 조각 상
징물, 기타 조경시설
3. 유희시설 : 그네, 미끄럼틀, 소구
모 모래사장, 연날리기장, 기타 어
린이의 놀이를 주목적으로 설치
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
4. 편의시설 : 장의자, 음수대, 기타
시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
5. 체육시설 : 정구장, 축구장, 기타
구기를 사용하는 운동시설 및 체
력단련을 위하여 설치한 운동시설
6. 기타시설 : 관리사무소, 기타 녹
지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
한 보조시설

제 4 조 (녹지시설관리) ①소장은 녹
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
각호에서 제기하는 조치를 하여야
한다.

1. 들베기 및 잡초제거
 2. 물주기, 물베기, 복토, 시비 및
병충해 방제
 3. 식식, 보식 및 고사목 제거
- ②소장은 시민의 사용 기타 사유
로 인하여 훼손된 녹지지역에 잔
디나 나무를 보식하여 경관을 보
건토록 한다.

다만, 녹지대로 유지관리 하는것이
오히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
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지시설

에서 제외할 수 있다.
제 5 조 (조경시설관리) ① 화단을 화목류 또는 조화류 식재지로 구분하여 화단으로 조성하고 계속하여 화단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분수대는 동절기 및 우기에는 식물 분출 가동하지 아니하며 분수 기능 유지, 동파예방,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조각 상점물, 기타 조경 시설은 그 외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유취시설관리) ① 유취시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정기 및 수시 안전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도에 이상이 있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시설과 보수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
③ 유취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관리할 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편의시설관리) ① 편의시설은 시민의 생활에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장의자, 음수대, 기타 편의시설의 손괴된 경우에는 시급히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체육시설관리) ① 정구장 등 구기구를 사용하는 시설은 구기사용

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기타 체육시설은 대중을 위하여 가능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은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설별로 관리할 자를 고정 배치하여 사용자 남입여부를 확인케 하고 그 시설이 적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시설을 단체가 일시적으로 독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이 그 이용목적을 검토하여, 건전한 내용일 때에는 이용 시간을 정하여 학생단체, 청소년단체, 시민단체 순으로 승인하여야 한다.

④ 잔디보식, 신식, 환작 및 노수를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구역내에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기타시설의 관리) 제 4 조 내지 제 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점점 및 순찰) 소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 진단과 훼손 또는 유실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, 일일순찰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, 점검 및 순찰결과를 기록 유지하

여야 한다.

제 11 조 (보수) 소장은 시설별로 정기 및 수시정비 계획과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를 교체, 복구, 제거, 도색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제한 및 금지)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제기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 또는 인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1. 폭우나 홍수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시설이 침수되었거나 시설의 침수가 예상되는 때
2. 시설의 복구, 기타 수리등 공사중일때
3.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때
4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

② 제 1 항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그 제한 또는 금지를 표시하는 팻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시설의 대부분 또는 중요시설에 대하여 이용 제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시설명, 위치, 사유등 그 내용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대피) 폭우나 홍수로 인하여 시설의 유실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진행중인 때에는 이등이 용이한 시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서 피해를 최소화 하

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피해복구) 소장은 폭우나 홍수로 인하여 시설이 유실, 파손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자재를 동원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보고) 소장은 홍수나 침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요시설이 유실, 훼손된 때에는 그 시설명과 수량, 면적등 피해상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대장비치) 소장은 한강시민공원의 지구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현황, 시민이용, 홍수, 침수, 시설개선, 변경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세부지침) 이 규정에 의한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시고시제 832 호

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11.24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액 (원)	비 고	
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	전차전투기	어 른	500	단체 및 우편환인출 : 30 % 내 결정	
	하늘차	청 소 년	500		
		어 린 이	500		
	두꺼비차	어 른	400		
	미니레일				
	도깨비집				
	팽이놀이				
	이충목마	청 소 년	300		
	회전목마				
	꼬마기차	어 린 이	200		
회전집					
요술집					
바즈카포					
운동시설	발데리차	어 른	1,600		
	아폴로의자		1,200		
	비행기		900		
	아기차	어 린 이	900		
수영장	수영장	청 소 년	1,200		
		어 린 이	900		
	실외정구장	평일, 면당 1 시간 토, 일면당 1 시간	900 1,600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33 호

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

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

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

1986.11.25

서울특별시장

종 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기 타 시설	서울대공원 호수 순환도로 무폐도 열차 사용료	어 른 : 1 회에 대하여 청소년 : 어린이 :	300 250 200	
○ 시행일 : 1986.12.1. ◎서울특별시고시제 838 호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 (기간연기)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772 호(85.11.13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, 유치원) 시 행허가한 관악구 봉천동 산 67-32, 34 일대 성덕고등학교, 성북유치 원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학 교, 유치원) 시행허가 변경하고 이 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6.11.25 서울특별시장 가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67-32, 34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 사업 (학교, 유치원) 시행 1) 성덕기술고등학교 2) 성북유치원 다. 사업의 시행자 주소, 성명 1)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재단 이사장 박행남 (관악구신림동 90-92) 2) 학교법인 성북학원 이사장 조종호 (동작구노량진동 232-192) 라. 사업시행규모 1) 대지면적 - 성덕기술학교 (1,915 m^2) 성북유치원 (987 m^2) 2) 건축면적 - 학교 (376 m^2), 유치원 (233,64 m^2), 수위실 (3,24 m^2) 3) 건축연면적 - 학교 (2,818,8 m^2), 유치원 (324,84 m^2), 수위실 (3,24 m^2)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- '85.12.4 준공예정일 (당초) - '86.12.31 " (변경) - '87.2.28 (부지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위치 변경)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전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의 의 권리관계 - 별첨 (생략) 사. 토지 또는 전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- 별첨 (생략)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39 호

보호수 신규지정 및 해제

산림법 제 6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신규지정 및 해제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86.11.25

서울특별시 장

1. 수종 및 수량

○ 신규지정 : 동나무의 1종 2주

○ 해제 : 동나무의 1주

2. 소재지 및 소재지소재로불림.

붙임 : 보호수 신규지정 및 해제내역

1부 끝.

보호수 신규지정 및 해제내역

(보호수 신규지정)

구별	지정번호	지정품목	수종	주수	수령	수고	통고	수관	소재지	소유자
종로	1-1-1-40	동나무	회화나무	1주	300년	17cm	2.5m	12m	종로구화동 138-32	국세청
성동	1-4-48	구나무	느티나무	1주	300년	20cm	2.5m	15m	성동구성수동 1가 642-1	죽수원지

(보호수해제)

지정번호	지정품목	수종및주수	소재지	소유자	해제사유
1-16-44	구나무	느티나무 1주	강남구압구정동 193-3	한국도시개발(주)	'86.8.28 태풍 베리호의 피해를 입어 줄기가 완전히 절단되어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상실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40 호

도시공원 시설사용료 결정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6 조 별

표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11.25

서울특별시 장

15-10 제 1328 호 시

보 1986.11.25

종 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기타시설	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 단체 사용	청소년 1회 어린이 1회	300 원 200 원	

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633 호 중기정비업체행정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료를 점정한 중		기정비업체에 대하여 중기관리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하였기 이에 공고한다. 1986.11.25 서 울 특 별 시 장
---	--	--

업 종	업 체 명	대 표 자	소 재 지	처분내용	사 유	근 거 법 규
종합중기 정비업 (허 가제 3 호)	서울중공업 주식회사	박인근	도봉구창동 135-5	영업정지 1 월 (86.11.24 86.12.21)	허가장소의 출장정기점검	중기관리법 제16조제 1 항

서울특별시공고 제 634 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신조 및 폐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을 다 음과 같이 신조 (폐기) 하여 서울특 별시 회계관계 직인규칙 제 7 조 및 제 9 조에 의거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. 1986.11.25 서 울 특 별 시 장	1. 공인명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 징수관인 폐기 서울특별시 구로부녀복지관 징수관인 신조 서울특별시 구로부녀복지관 수입금출납원인 신조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 징수관인 신조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 수입금출납원인 신조 2. 사용개시 (폐기) 일자 : 1986.11 3. 공인의 인영 : 별첨
--	---

인 영			1. 인명: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징수관 인 폐기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수입금 출납원인 폐기 서울특별시남부군로청소년회관 징수관인 신조 서울특별시남부군로청소년회관 수입금출납원인 신조 서울특별시동부군로청소년회관 징수관인 신조 서울특별시동부군로청소년회관 수입금출납원인 신조
공인명	서울특별시부녀 복지관징수관 인	서울특별시구로부녀 복지관 징수관 인	2. 사용처서(폐기)일자: 1986.11
인 영			3. 공인의 인영
공인명	서울특별시구로부녀복지관수입금출납원인		

○서울특별시공고 635 호

서울특별시세입징수관공인신조및폐기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을 아
래와 같이 신조(폐기)하여 서울특
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
7 조 및 제 9 조에 의거 등록하고
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
공표한다.

1986.11.25
서울특별시청
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근로청 소년회관 징수관인	서울특별시근로청소 년회관수입금출납원인	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남부군로 청소년회관징수관인	서울특별시남부군로 청소년회관수입금 출납원인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8호

서소문구역제 4 지구재개발사업시행
변경인가를위한공람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783 호 ('84.12.26)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9 호 ('86.8.2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왕동산(주)이 도시재개발법 제 33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바, 동법

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2.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.

1986.11.25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내용

구 분	기 장	변 경
사업시행기간	'84.12.26 ~ '86.12.31	'84.12.26 ~ '88.9.30
나. 변경사유 : 지장물철거로 인한 공사 착공지연 다. 공람기간 : '86.11 ~ '86.12 라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		기인 대표 정월학원 이사장 강종락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9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21 지구재개발조합 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 1. 건설부고시제 345 호 ('79.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 146 호 ('80.5.19), 서울시고시제 275 호 ('86.5.1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21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 발		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것이나, 미수령자에게는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,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		1986.11.25 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명칭 : 마포로제 1 구역제 21 지구
구 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: 마포구공덕동 435-3 외
5필지 (제 6 필지)

다. 지행면적 : 2,379.7 m^2

○ 대지면적 : 1,887.6 m^2

○ 공공시설면적 : 492.1 m^2

라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서 및 정관

마. 사업시행예정자 : 마포로제 1 구역
제 21 지구 재개발조합

발기인 대표 정철학원 이사장
강 중 락

바. 공람기간 : 1986.11.25 ~ 12.24
(30 일간)

사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
재개발과 (731-6356-9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40 호

남대문구역제 9-1 지구재개발사업시행
인가를위한공람

1. 건설부고시 제 123 호('77.6.29)

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

제 425 호('78.12.29) 및 서울특별시

고시 제 472 호('84.8.9) 로 사업계획

적결정 및 변경결정된 남대문구역

제 9-1 지구에 대하여 동지구내 토

지동 소유자인 미원중기주 대표이사

사 유병운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

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

1. 신청이 있는 등법 제 15
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
람일부터 30 일간 일한하여
인한다.

2. 동사업 시행구역내의 토지동
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
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
등 소유자 및 권리관계
동지할 것이나 미소유자에
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86.11.25

서울특별시 상

가. 사업의명칭 : 남대문구역 제 9-1
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및 면적

○ 시행구역 : 충무로동 1 가

○ 195-15, 196, 196-2,

196-4, -5, -6, -7, -8, 197-1, -3,

-4, -6, 197-8, 198-1, -2, 199-1,

199-3, -4, 11, 199-13, 22 필지

○ 시행면적 : 2,928.0 m^2

다. 사업시행예정자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: 미원중기주 대표이사 유 병 운

미원중기주 대표이사 유 병 운

라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서 및 정관

마. 공람기간 : 1986.11.25 ~ 12.24

(30 일간)

바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
재개발과

구 공 고

◎강동구청공고제 112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

1. 하수도법 제 6조에 의거 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토지 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는

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6.11.25

강 동 구 청 장

공 랑 개 요

1. 사용개시년월일 : 별첨
 2. 배수구역 : 성내배수구역
 3. 사용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: 별첨
 4. 사용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 : 합류식
 5. 공람기간 : '86.11.25 ~ '86.12.9
- 첨부 : 1)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내용 1부.

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내용

번호	공 사 명	위 치	배수구역	구 분	사용개시년월일
1	천호동 37번지 주변 하수도 및 포장공사	천호동 37번지 주변	성 내	합류식	'86. 6.30
2	풍납동 229, 성내동 222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	풍납 222, 229, 88, 293번지, 성내동 154, 200, 222번지	"	"	'86. 7.10
3	천호동 423-386 간 하수도 개량공사	천호동 423-386번지	"	"	'86. 7.12
4	천호동 235-243, 암사동 425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	천호동 233-5-243-46, 암사동 425-16, 433-107	"	"	'86. 7.16
5	광진교 천호대교간 하수도 및 포장공사	풍납동 98-2-97-6, 257, 68, 성내동 37, 144	"	"	'86. 6.17
6	천호동 195번지의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	천호동 195, 108, 110번지 주변	"	"	'86. 8.17

제 1328 호

시

보 1986.11.25

번호	공 사 명	위 치	배수구역	구 분	사용개시년월일
7	거여동 554 번지의 1 개 소 하수도 개량공사	거여동 554 번지 주변 마천동 178 " "	"	"	'86. 11
8	천호동 182 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	성내동 203 번지 주변 성내동 248 " " 천호동 142, 134 "	"	"	'86. 11

사 령

◎ 1986년 11월 22일자

령제 474 호

성 명	발령부서	발령직급	현부서	직위	현직급
한인우	전자계산소	지방별정직 6 급상당	전자계산소	전산처리사	지방별정직 7 급상당
김선례	"	" 8 급상당	"	천 관 원	" 9 급상당
홍경희	"	"	"	"	"
김덕희	"	"	"	"	"

소 속	직 급	성 명	훈 련 분 야	훈련기관	과 건 기 간	훈련비용
무자관리 담당관실	지방행정 주 사	김 양 기	도시환경개선및 교통영향평가	미 국 URBA	'86.11.28 ~ '87.5.5 (5 개월 8 일)	국 비

서울특별시